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20재나50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A

피고(재심피소),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낙일

변 론 종 결 2021. 3. 23.

판 결 선 고 2021. 4. 13.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가단70555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나25621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서울 강남구 C 대 287.5㎡ 중 287.5분의 27.37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7. 접수 제664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말소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70555호로 서울 강남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일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4.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25621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0. 3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다28876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2. 6.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의 전제가 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12060호 판결이 소송사기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폐쇄등기부에 ‘토지에 대하여 별도등기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건물에 관한 대지권이 성립되기 전임에도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채 만연히 모든 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았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와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재심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재다16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사기죄를 인정하는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다음으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린 이상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면,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8. 7. 16.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는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즉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재심사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내세우고 있으나, 그 주장을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에 어떠한 판단누락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의 선행한 판결에서 그 판단을 잘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진원, 판사 이상률, 판사 윤동연